

제278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2009년 3월 27일(금)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9. 3. 27.

행정소방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3월 6일  
김환동 의원 외 6인

2. 회부일자 : 2009년 3월 11일

###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3. 20)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환동 의원)

#### 1. 제안이유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및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모 닥불, 연막소독 등의 사전신고에 관한 사항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의 사전신고(안 제2조)
  - 사전신고에 관한 사항 중 소방기본법 제19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방법, 해당지역 또는 장소를 정함.
  - 미리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화재예방은 물론 오인출동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안 제3조)
-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 전기시설 외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불티가 생기는 설비, 가스나 전기 용접 · 용단기의 관리기준을 정함.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모닥불, 연막소독 등의 사전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안 제4조)
- 불피움 · 연막소독의 사전신고 의무위반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를 정함.
  -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 가. 조례안 제정경과

이 조례안은 2005년 5월 29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전신고 방법 및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2005년 10월 20일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사전신고(안 제2조)

안 제2조는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신고 대상지역 및 장소와 신고 방법을 정하고 있음.

이는 신고지역 확대로 일부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점은 있으나 화재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각되며 오인출동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기준 관련(안 제3조)

안 제3조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라.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4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에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소방기본법 제57조제1항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정한 것으로 이견은 없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토론 요지 : “생 략 ”

VI. 심사 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등

##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등)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 (팩스 및 인터넷을 포함한다)이나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택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 주거용 콘테이너·비닐하우스 설치 장소
  3. 축사시설(돈사·계사·우사시설 등을 말한다) 설치 지역
  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약적해 놓은 공사현장
  5. 법 제15조제2항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구두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관리기준)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불티가 생기는 설비(그라비야인쇄기·기모기 및 솜틀기계 등과 같이 조작을 할때에 불티가 생기거나 자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날리는 설비를 말한다).

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기

② 제1항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가연물의 제거 및 안전조치와 소화기구의 준비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제3조제3항 관련)

설비 구분	설비의 관리기준
1. 불티가 생기는 설비	<p>가.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p> <p>나.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접지(接地)에 의한 방법</li> <li>(2)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li> <li>(3)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li> </ul> <p>다. 자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2.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기	<p>가. 용접·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나.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접·용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의 실시</li> <li>(2) 주위의 인화성 물질의 제거</li> <li>(3) 용접·용단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li> <li>(4)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li> <li>(5)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피 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li> <li>(6)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li> <li>(7)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ul>

## [별표 2]

과태료 부과 기준(제4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금액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 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	20만원

## [별지 제1호서식]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제2조제2항 관련)

신고자	성명	(전화번호 : )
	주소	
예정일시		
연소장소		
연소물품 및 수량		
연소목적(사유)		
화재예방상 조치		
관계인 인적사항	성명 : (전화번호 : )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 . .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 귀하**

※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자	소속	계급	성명
	접수시간		처리내용	

## 관계법령 발췌

### □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생략)
3.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4.~6.(생략)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생략)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1. 시장지역

- 2.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6. 그 밖에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제57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④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 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8.4]

##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0.20>

**제7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08.1.22>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19조(과태료 부과)**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2.(생략)
- ②(생략)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같은 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제6호의2 ·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